

#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2년 12월 17일

나. 회부일자 : 2002년 12월 17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 
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(2002년 12월 27일)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조택용)

### (1) 제안이유

- 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이 당초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. 12. 31까지로 연장 승인되었으나
- 동 기능전환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·정원의 존속기한이 2004. 6. 30까지로 재연장 승인되었기에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

### (2) 주요골자

- 조례 제518호 부칙 제2조 중 “2003년 1월 1일”을 “2004년 7월 1일”로 하며,
- 조례 제575호 부칙 제2조 중 “2002년 12월 31일”을 “2004년 6월 30일”로 함.
-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함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장 재 영)

이번에 개정 논의된 사안은 구 본청에 두는 행정기구의 수를 기간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518호 부칙 제2조(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)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575호 부칙 제2조에 관한 것으로, 이들 두 조문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하겠음.

한시기구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행정기구이며(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), 필요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하겠음(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).

우리 구에서는 1999년부터 동기능 전환에 따른 구 이관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주민자치과를 대민 한시기구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나, 그 동안 행정자치부로부터 동기능 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이 2001. 6. 30까지로 승인되었으나 동 기능전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그의 존속기한이 2002. 12. 31까지로 연장 승인된 바 있음.

이번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이 2004. 6. 30까지로 재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 동 기능전환의 원만한 마무리 및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동 기능 전환사업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생각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광주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

##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518호 부칙 제2조 중 “2003년 1월 1일”을 “2004년 7월 1일”로 하고

조례 제575호 부칙 제2조 중 “2002년 12월 31일”을 “2004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[조례 제518호 부칙(1999.8.20)]</b></p> <p>제2조(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구는 2001년 6월 30일까지는 15실·과로 하고, 2001년 7월 1일 이후에는 15실·담당관·과로 하며, <u>2003년 1월 1일</u> 이후에는 14실·담당관·과로 한다.</p> <p><b>[조례 제575호 부칙(2000.12.30)]</b></p> <p>제2조(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구 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<u>2002년 12월 31일</u>까지로 한다.</p>	<p><b>[조례 제518호 부칙(1999.8.20)]</b></p> <p>제2조(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) ----- ----- ----- -----<u>2004년 7월 1일</u> ----- ----- .</p> <p><b>[조례 제575호 부칙(2000.12.30)]</b></p> <p>제2조(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) ----- ----- --<u>2004년 6월 30일</u> ----- .</p>